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Improvement Problem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Assault Offender

Kim-Sang Gyun *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BaekSeok University *

요 약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 재범위험성 평가, 성폭력, 억제

Abstrac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certain criminal offenders. Korean society manages ex-convicts only in reliance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has a clear limit. For this reason, The reorientation program should be put before anything to subdivide the perpetrators equipped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nd separate them from the others from the start, or identify their criminal propensity and heal them.

Key Words :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lectronic bracelet, assesment of risk of recidivism, sexual assault, deterrence,

1. 서론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에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에 의하여 구금의 장소를 대상자의 자택 등 한정된 곳으로 제한하여

구금에 유사한 효과를 저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2010 3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제도 시행 3년 전까지 소급

Received 18 December 2013, Revised 20 Jan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Kim-Sang Gyun(BaekSeok University)
Email: sgkim@bu.ac.k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용되고 전자발찌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1]. 그러나 GPS를 활용한 강화된 수준의 보호관찰 감독과 제재방법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전자감시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교정의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2차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논의

2.1 지역사회교정과 전자감시제도

지역사회교정이란 범죄예방, 공식적 재판절차로부터의 전환, 교정, 석방 후 프로그램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가 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2]. 회복적 사법에 기초를 둔 지역사회교정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범죄자의 행동을 통하여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데 있으며, 이는 결국 범죄자, 피해자,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이처럼 사회내 처우가 구금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벌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억제이론의 논리가 모든 범죄자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강력한 구금 수단이 선량한 법준수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다지 큰 범죄억제력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3].

2.2 억제이론과 저항이론

2.2.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억제이론은 형벌이 인간의 행동, 즉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본적인 요소로 처벌의 신속성과, 엄격성, 그리고 확실할수록 잠재적 범죄행동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 형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에 있어서는 일부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억제이론이 범죄행동을 억

제하는데 긍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원리를 억제이론에 적용하면, 24시간 발찌부착자의 위치를 GPS 시스템이 상시 추적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단시간 내에 위치추적 센터 담당자가 준수사항 위반 등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감독보다 처벌의 '신속성'이 증가된 제재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4].

2.2.2 저항이론(Defiance Theory)

저항이론은 기본적으로 처벌에 대한 반응이 범죄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본다. 국가권력에 대한 부정과 저항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저항이론의 핵심이다[4].

먼저 형벌의 공평성이다. 일반 시민들이 특정 형벌이 합법적이고 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그 형벌규정에 순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법 규정과 형벌내용 과정은 공평하게 규정·집행 되어야한다. 둘째, 형벌부과기관과의 소원함이다. 담당 보호관찰관과 발찌 부착자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범죄자가 형벌을 낙인적 제재수단으로 인식하면 부정적인 저항감이 발생하여 오히려 범죄증가가 생길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실태

3.1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의 연도별 발생실태를 보면 2008년도 15,970건에서 2012년 22,935건으로 연 평균 10.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폭력 범죄는 전국 1일 평균적으로 62.8건(서울의 경우 1일 평균 16.6건)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2 성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실태

성폭력 범죄자 연령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9

1) 최근 5년간 서울의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1일 평균 16.6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미만인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도 11.9%가 나타나고 있다. 19세 이상 30세이하의 청년층이 2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30대가 21.5%, 40대가 19.5%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자 젊은 연령대일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실태

전체적으로 2008년 1,220건에서 2012년 1,075건으로 감소하였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전국 1일 평균 2.9건(서울의 경우는 0.4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28건에서 2012년에는 656건으로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4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실태

최근 5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08년 4,511건에서 2012년 7,725건으로 1.7배 정도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8년 824건에서 2012년 1,6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발생은 전국적으로 1일 평균 21.1건으로 나타났다.

3.5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 실태

최근 3년간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 실태와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0년 20,375건이 발생하여 19,712명을 검거하였다. 이중 동종의 재범자는 1,459명으로 7.4%를 차지하였고, 이후 2012년까지 8%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중재범의 경우 39.5%를 차지하고 있어, 47% 가까이가 동종과 이종의 전과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재범억제 방안 강구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5]

4.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4.1.1 보호관찰관 인력부족 문제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이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감시제도의 효용성의 감소가 두드러진 이유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7] 또한 보호관찰관은 전자감시제도의 부착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총괄하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배송에서부터 수급·부착·이상여부 확인·교체·기간 종료 후 전자발찌의 회수 등과 같은 전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과 위반 시에 형사상의 책임을 고지하는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6].

4.1.2 전자발찌자체관리위반의문제

최근전자장치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경우, 즉, 전자발찌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지게 하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다른 곳에 놓아두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²⁾ 이러한 이유는 부착대상자들이 전자장치효용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의무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7]

4.1.3 대상자의 재범 문제

전자감시제도는 대상자가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구역 및 외출제한시간을 벗어나면 중앙관제센터에 빨간불이 켜지고 보호관찰관이 출동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이 허락된 구역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7] 일부 연구에 의하면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다.[10] 즉 대상자의 위치추적만 가능할 뿐 그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 전자감시대상자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4.1.4 재범위험성 평가의 문제

현재 전자 감시제도의 쟁점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가려내는 데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재범률 및 그 상이한 유형에 따른 재범률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기준조차 정립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7] 관련법률³⁾에 의하면 검사로 하여금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의 사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기타 전문가의 진단결과를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성폭력 범죄자를 비롯한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2 개선방안

4.2.1 보호관찰인력 보강을 포함한 인적 인프라의 확충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착용에 의한 기계 의존적인 감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1] 보호관찰관과의 긍정적인 관계수립을 전제로 할 때에만 범죄억제력과 전자감시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의 확충과 아울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와 연계활동을 통하여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고충 및 심리상담 등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문제해결도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복지기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2.2 위치추적 전자감시장비의 개선을 포함한 물적인 인프라의 보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장치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기계적인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1] 우선, 위치추적 장비에 대한 견고성과 신뢰성의 확보, 오경보율의 최소화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 개선되어야 할 것은 대상자의 위치만 추적할 것이 아니라 감시대상

자의 동선과 행동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순찰차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연동도 동시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4.2.3 재범위험성판단을 위한 정신건강 조사위원회 설치운영

현재 전자 감시제도의 쟁점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식별해내는 작업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기준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부작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감 중인 성범죄자가 석방되기 6개월 전에 주 정신건강국에 그 평가를 의뢰하여야 전문적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보다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5. 결론

한국 뿐 아니라 많은 선진외국에서 이미 정착한 전자감시제는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대표적인 전략이며, 향후 구금처우 보다는 지역사회 교정처우를 국가교정시스템의 근간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제도의 시행초기인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9]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경우처럼 전자감시제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재범위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자감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인원의 확충이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배분하여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감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전자감시대상자를 효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8]

출소 후 부착명령이 부과된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있는 교정복지전문기관내지 전문가와의 연결망을 구성하여 전자발찌부착자가 심리적 저항감과 보호관찰관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정복지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부착대상자에 대한 감시를 통한 재범억제 뿐 아니라 그들의 심리정신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Yun, Jee-Young, A Critical Study on the GPS Monitoring System: In Comparison with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18, No2, pp. 391-392, 2010.
- [2] Huh, Koung Mi, Problems and Reform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the Community Corrections, Correction Service Review, Vol. 42, pp.78-79. 2009.
- [3] Cho, Younoh, A Study on the Sex Offender Perceptions of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Vol 17, No2, p. 27, 2013.
- [4] Cho, Younoh,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Defiance for Sex Offenders under GPS Electronic Monitoring, Korean Criminology Review Vol 21, No 2, p.292, 2010.
- [5] Heo, Seonju, Jo, Eunkyung,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0, No1, p.36, 2012, 4.
- [6] Ho Sung, Kang· Heo Gap Moon, A Study on the Effect and Suggetions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Probation, Vol 10, No2, p. 120-121, 2010.
- [7] Oh, Sam Gwang, A Study on the Scheme for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eoul Law Review, Vol 20, No1, p.321, 2012.

- [8] Hwang, Il Ho,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means for Community-based Correction, Correction Service Review Vol.44, p.20, 2009.
- [9] Jeong, ShinKyo,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ongIk Law Research Vol 12, No2, pp.232-234, 2011.
- [10] Cho, Younoh, A Study on the Crime Deterrent Effect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Public Saftey and Criminal Justice, Vol.37.pp.158-159, 2009.

김 상 균(Kim Sang Gyun)



- 1996년 2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 2000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범죄, 범죄심리

· E-Mail : sgkim@bu.ac.kr